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렴세움

수신자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접수 안내

1. 2023년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접수 관련하여 개정된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거비지원 소득기준

기존	변경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2년 기준 : 6,208,934원)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022년 기준 : 7,450,721원) (배우자 포함)	- 청년 : 신청자 본인 (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 하단 표 참조

-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3,212,113	-	-	-	-
120%	-	5,813,244	7,702,279	8,640,970	8,791,286
비고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자녀1	신혼부부+자녀2	신혼부부+자녀3

※ 위 금액은 2022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2023년도 자료 발표 시 금액 변동 예정

나. 주거비지원 자산기준

기존	변경
- 신혼부부 : 3억 2,5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기준 3억 2,500만원 이하

※ 위 금액은 2022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2023년도 자료 발표 시 금액 변동 예정

다. 주거비지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변경
미제출	-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을 경우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주거비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 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로 대체하여 제출

라. 변경된 기준은 **2023년 2월 1일 이후 주거비지원 접수분부터 적용**

마. 세부내용은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 안내문 참조

붙임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안내문(22.12.29.) 1부. 끝.

서 울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부원	임재현	역세권청년주택종합지원센터(T)	전결 12/29 김학진	
협조자				

시행 역세권청년주택종합지원센터(T)-282 (2022.12.29.) 접수 ( )

방참번호
우 05838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라이프 영관 8F / www.i-sh.co.kr
전화 02-2157-4675 전송 02-2157-4677 / shhyun2@i-sh.co.kr / 비공개(7)